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구성 변경: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

- (현행) 평창군수 단독위원장 → (개정) 평창군수, 평창경찰서장 공동위원장

나.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: 평창소방서장 추가

다. 각 기관 담당부서장 직위 현행화

- 평창경찰서: 경무과장 →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
- 평창군청: 자치행정과장 →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
- 평창소방서: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(신설)
- 평창교육지원청: 지원과장 → 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

라. 협의회 개최시기 조정: 분기별 → 반기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평창경찰서 합의 완료(범죄예방대응과-1833(2024.06.10.)호)

- 문서명 [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개정 협조 요청]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4. 6. 21. ~ 2024. 7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912호, 행정과-14416(2024. 6. 21.)호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9590(2024. 6. 24.)호]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 [기획실-9590(2024. 6. 24.)호]

4) 성별영향평가: 자체개선안 반영 [가족복지과-21195(2024. 6. 26.)호]

- 개선안: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61(2024. 7. 24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797(2024. 8. 14.)호]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**”를 “**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**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“군”**”을 “**“군”이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평창군(이하“군“이라 한다)에**”를 “**군에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**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**”를 “**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**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**위원장**”을 “**공동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2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위원장은 군수로**”를 “**공동위원장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와 평창경찰서장으로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**협의회의**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**당연직** 위원은 군수, 평창군의회 의장, 평창경찰서장, 평창소방서장,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,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으로 한다.

제4조제5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협의회의** 위원은 **당연직** 위원과 **위촉직** 위원으로 구분하고, **당연직** 위원은 **평창군수, 평창군의회**

의장, 평창경찰서장,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,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, 위촉직”을 “위촉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경무과장”을 “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“실무협의회”를 두며, 실무 협의회는 평창경찰서의 경무과장이”을 “평창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실무협의회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행정담당관”을 “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무과장”을 “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 제3호) 중 “지원과장”을 “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분기별로”을 “반기별”로 한다.

3. 평창소방서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

제11조제2항 중 “분기별로”을 “반기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·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, <u>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</u>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으로 평창군(이하 “<u>군</u>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으로 <u>평창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</u>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 “범죄행위”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(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“<u>군</u>”이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 <u>군</u>에 ----- ----- --.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협의회 설치)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<u>지역치안협의회(이하“협</u></p>	<p>제3조(협의회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(이하 “협</u></p>

② (생략)

제6조(간사) ①협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창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협회 산하에 기관·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"실무협의회"를 두며, 실무 협의회는 평창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.

② (생략)

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평창군청 행정담당관
2. 평창경찰서 경무과장

<신설>

3. 평창교육지원청 지원과장

4. 5. (생략)

지 않도록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간사) ①-----

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-----

-- 평창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
(이하 "실무협의회"라 한다)를 두며, 실무협의회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.

1. -----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
2. -----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
3. 평창소방서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
4. ----- 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

5. 6. (현행과 같음)

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) ① (생략)

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④ ----- 반기별 -----

-----.

제11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반기별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2. 16.] [법률 제19023호]

제3조(경찰의 임무)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2. ~ 7. (생략)
8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(생략)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 - 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 - 나. ~ 라. (생략)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

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11. 10.] [대통령령 제33451호]

제2조(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
2. 관할 지역의 인구,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·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
3. 기관 간 협의체 구성, 상호협력·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
4.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

[별표] 중 발췌

자치경찰사무		범위
1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	나. 주민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	1) <u>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</u> 2) <u>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·관리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13조제1항

: “군수는 협의회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

→ 2024년도 기준 보조금 금45,000천원 교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권혁수
연락처	(033) 330 - 2210